

보도자료

2024. 1. 19.



양형위원회

문의

운영지원단장 범선윤
(☎ 02-3480-1924)

양형위원회 제129차 및 제129-1차 회의 결과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2024. 1. 8. 제129차 전체회의를, 2024. 1. 18. 제129-1차 전체회의를 열어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스토킹범죄 및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안을 의결하였음

☞ 향후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24. 3. 제130차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 예정

■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안 의결

1.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에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대유형 4)' 유형을 신설하고, 양형기준의 명칭을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으로 수정

- 기존에 영업비밀 침해행위(대유형 3)와 같은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던 기술침해범죄를 독립된 유형으로 분리하면서, 기존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던 국가핵심기술 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형량범위표와 양형인자표를 설정함으로써 기술침해범죄의 특수성에 맞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2. 영업비밀 침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하고, 기술침해범죄에 대하여 강화된 권고 형량범위 제시

- 부정경쟁방지법 법정형 개정, 영업비밀 보호 강화 요청 등을 반영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형량범위를 상향

- 기술침해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기술침해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하여, 기존 양형사례나 법정형이 동일한 유사 범죄군의 양형기준보다 규범적으로 상향된 형량범위 제시
 - 국가핵심기술 등 국외침해의 경우 최대 18년까지 권고(산업기술 국내침해의 최대 권고형량은 기존 6년 → 9년으로, 산업기술 국외침해의 최대 권고형량은 기존 9년 → 15년으로 상향)
- ※ 이하 삭제는 붉은 글씨, 수정은 파란 글씨로 표시함

03¹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국내침해	10월 6월 - 1년6월	8월 - 2년 10월 - 3년	1년 - 4년 2년 - 5년
2	국외침해	10월 - 1년6월 3년	1년 - 3년6월 1년6월 - 5년	2년 - 6년 3년 - 8년

04¹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누설·도용	- 8월	6월 - 1년6월	1년 - 3년6월
2	국내침해	8월 - 2년	1년 - 4년	2년6월 - 6년
3	산업기술 등 국외침해	1년 - 3년6월	2년 - 6년	4년 - 10년
4	국가핵심기술 등 국외침해	2년 - 5년	3년 - 7년	5년 - 12년

3. 특별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강화

① 특별가중인자인 ‘권리자(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의 범위를 확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특허권, 영업비밀, 기술 등을 침해한 경우’도 포함되도록 함

- 지식재산·기술침해 사건에서는 피해기술 등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액의 심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점, 상당한 금액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경우 침해자가 해당 연구개발비 상당을 절감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기업의 투자·노력에 대한 부

정취득 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적 고려

○ 정의규정

[권리자(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침해행위·부정경쟁행위로 인한 매출 비중이 침해자의 총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나, 권리자(피해자)의 총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 오로지 특정권리를 침해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장을 마련한 경우
 - 권리자(피해자)의 사업이 도산위기에 처하거나 심각한 매출감소로 인하여 치명적 경영상태 악화 등의 결과가 초래된 경우
 - 거래계에 인지도가 높은 상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 당해 산업분야에 근간이 되는 표준기술 또는 획기적인 진보를 이룬 기술에 관한 특허권 등을 침해한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과 경쟁관계 또는 납품·도급관계에 있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의 중소기업기술의 침해 또는 유출인 경우
 - 상당한 금액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특허권, 영업비밀, 기술 등을 침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② 특별가중인자인 ‘비밀유지에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피고인이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등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인 경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를 정의규정에 추가함

- 영업비밀(기술)은 거래처, 파견직원 등에 의해서도 유출되는데, 현행 정의규정이 이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관계기관 의견 반영
- 계약상 의무를 위배하여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등을 침해한 경우 가중하는 것이 타당하고, 열거된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에 준하는 경우도 포섭할 수 있도록 정의규정 확대
- 정의규정

[비밀유지에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인이 산업기술보호법 제34조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 피고인이 권리자(피해자)의 회사에 고용되지 아니한 자로서 도급 등의 형태로 권리자(피해자)의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권리자(피해자)로부터 기술개발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자인 경우

- 피고인이 현재의 권리자(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등을 양도하고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후 유출 또는 사용한 경우
- 피고인이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등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③ 특별감경인자인 ‘영업비밀(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경우’의 정의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수정하여, 피고인이 영업비밀(기술)을 외부에 전혀 누설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유출된 영업비밀(기술)이 반환·폐기되어 결과불법이 낮은 경우에 한하여 위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도록 함

- 영업비밀(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 결과불법이 낮은 점을 고려한 특별감경인자로, 기술유출범죄의 특성상 대부분 자료들이 디지털화되어 복제가 용이하므로 정의규정에서 유출된 정보가 반환·폐기된 경우임을 명확히 함
- 정의규정

[영업비밀(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경우]

- 피고인이 취득한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등을 외부로 전혀 누설하지 아니하고, 그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등이 권리자(피해자)에게 반환·폐기되어, 권리자(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낮은 경우를 의미한다.

④ 특별감경인자 ‘자수’를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로 수정하여 암수 범죄 적발 및 추가 피해 방지 유도

- 범죄 가담자 협조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관계기관 의견을 받아들여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등 범죄군의 양형기준을 참조하여 위와 같이 양형인자를 수정

⑤ 집행유예 기준 강화

- 영업비밀 및 기술침해범죄가 대부분 초범에 의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영업비밀 및 기술침해범죄(대유형 3, 4)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집행유

예 주요참작사유에서 제외함

- 기술침해범죄(대유형 4) 집행유예 기준에서, '산업기술 등 침해의 경우(제2, 3, 4유형)'를 집행유예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설정하여 국내침해(제2유형) 및 국외침해(제3, 4유형) 유형에서는 집행유예가 제한되도록 규정

▣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안 의결

1. 권고 형량범위 및 형종 선택의 기준

1. 스토킹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스토킹범죄	- 8월, 100만 원 - 1,000만 원	6월 - 1년, 500만 원 - 2,000만 원	10월 - 2년6월
2	흥기등휴대 스토킹범죄	- 10월, 300만 원 - 2,000만 원	8월 - 1년6월	1년 - 3년6월

- ▷ 1유형의 가중영역: 처벌불원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500만 원 - 3,000만 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 ▷ 2유형의 기본영역: 처벌불원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500만 원 - 4,000만 원으로 한다).

2. 잠정조치 등 위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긴급응급조치 위반	- 6월, 100만 원 - 300만 원	4월 - 8월, 200만 원 - 600만 원	6월 - 1년, 500만 원 - 1,000만 원
2	잠정조치 위반	- 8월, 100만 원 - 700만 원	6월 - 1년, 300만 원 - 1,500만 원	10월 - 2년

- ▷ 2유형의 가중영역: 처벌불원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0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① 권고 형량범위

- **흉기등휴대 스토킹범죄(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경우, 양형실무와 사건 증가 추이, 법정형이 동일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범죄의 특수성 내지 위험성,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정함.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의 경우 최대 5년(법정형 상한)까지 권고
- **일반 스토킹범죄(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경우 법정형이 동일·유사한 범죄들의 형량범위, 양형실무 등을 두루 고려함.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의 경우 최대 3년(법정형 상한)까지 권고
- **긴급응급조치 위반죄(법정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잠정조치 위반죄(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경우, 법정형이 낮으나 향후 강력 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는 스토킹범죄의 특수성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긴급응급조치 위반죄의 감경영역에도 징역형 구간을 함께 제시

② 형종 선택의 기준

- 흉기등휴대 스토킹범죄의 가중영역에서는 징역형만을 권고하고 예외적으로도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게 설정
- 일반 스토킹범죄의 가중영역, 흉기등휴대 스토킹범죄의 기본영역, 잠정조치 위반의 가중영역에서는 ‘처벌불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서술식 기준을 설정
- ‘처벌불원’의 정의규정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2. 양형인자

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고, 그 정의규정에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 범행으로 인하여 생활방식을 변경하는 등 가정생활, 학업, 생계 등에 있어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 포함되도록 함

-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변의 안전 등을 우려하여 이사, 이직, 영업포기 등 생활방식을 변경하거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공황장애 등을 겪는 등 중대한 피해를 입는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가족, 동거인, 아동 등에게 큰 피해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
- 정의규정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 범행으로 인하여 이사·이직·사직·휴학 등 생활방식을 변경하는 등 가정생활, 학업, 생계 등에 있어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 피해자와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가족, 동거인, 아동 등에게 큰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②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되 정의규정에 ‘협오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포함

- 정보통신망 이용범죄(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 협박범죄, 주거침입범죄 등 다수의 범죄군에서 정한 것처럼 위 인자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되, 협오범죄가 특별가중사유가 되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정의규정에 ‘협오감’을 추가하고,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스토킹범죄를 하는 경우도 포함
- 정의규정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이나 혐오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③ 스토킹범죄의 특별가중인자로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를, 일반가중인자로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을 각각 설정하고, ‘동종 전과’의 범위에 스토킹범죄 외에도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 범죄(사이버 스토킹) 및 동일 피해자 대상 살인미수범죄, 폭력범죄, 감금·학대범죄, 주거침입범죄,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명예훼손범죄, 업무방해범죄, 방화범죄, 무고범죄를 폭넓게 포함시켜 해당 전과가 있는 경우 양형가중사유로 반영되도록 함

-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동일 피해자에 대한 폭력, 주거침입, 성범죄 등 범행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가해자가 재범한 경우가 있고, 해당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이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기로 하여 특별가중인자의 범위를 확대함
- ‘동종 전과’의 정의규정

[동종 전과]

양형기준이 설정된 스토킹범죄, 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 범죄 및 동일 피해자 대상 살인미수범죄, 폭력범죄, 감금·학대범죄, 주거침입범죄,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명예훼손범죄, 업무방해범죄, 방화범죄, 무고범죄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④ 스토킹범죄의 특성과 양형실무 등을 고려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및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등도 특별가중인자로 설정

■ 공탁 관련 양형인자 정비

-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및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에서, 감경인자인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및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모두 삭제하기로 함

- 공탁은 피해 회복 수단에 불과하나,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로 인하여 마치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하여 양형인자에서 위 문구를 삭제하기로 함

○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및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에서 감경인자인 **'실질적 피해 회복'**의 정의규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

- 공탁이 독자적인 양형인자가 아니라 피해를 회복하는 수단의 하나임을 분명히 하면서, 실질적 피해 회복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사,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의사 등을 신중하게 조사·판단하도록 함
-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정의규정

[실질적 피해 회복]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공탁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사,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의사 등을 신중하게 조사·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 스토킹범죄 정의규정

[실질적 피해 회복]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공탁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사,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의사 등을 신중하게 조사·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 마약범죄 양형기준안 의결

1.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 양형 강화

-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대유형 2-나)' 유형을 신설하고,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하여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

02¹ 매매·알선 등

나.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환각물질	6월 - 1년	10월 - 2년	1년6월 - 3년
		6월 - 10월	8월 - 1년6월	10월 - 2년
2	대마	1년 - 3년	2년 - 5년	4년 - 7년
		8월 - 1년6월	1년 - 2년	1년6월 - 4년
3	마약, 향정 등	2년6월 - 6년	5년 - 9년	7년 - 12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5년 - 8년
4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6년 - 10년	8년 - 13년	10년 이상, 무기
		5년 - 9년	7년 - 11년	9년 - 14년

- 최근의 마약류 확산세와 10대 마약범죄 증가 추세에 대한 사회적 우려, 미성년자 대상 마약 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 필요성,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수수·제공 등 범행에 대해 법정형을 상향한 취지 등을 고려하여 권고 형량범위 상향
-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

2. 대량범에 대한 양형 강화

- 마약범죄의 대량화 추세를 반영하여, 대량범(대유형 4)의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하고 대량범(대유형 4)에 특정 마약범죄에 대한 마약가액 10억 원 이상 구간(제4유형)을 신설하여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

04¹ 대량범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제1유형	2년 - 4년	3년 - 6년	5년 - 8년 9년
2	제2유형	3년6월 - 6년 7년	5년 - 9년 6년 - 10년	7년 - 11년 8년 - 13년
3	제3유형	6년 - 9년	8년 - 11년	10년 - 14년 15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4	제4유형	8년 - 12년	10년 - 15년	13년 이상, 무기

- 대량범(대유형 4)은 마약의 종류 및 가액에 따라 제1, 2, 3유형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제3유형(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사건)에 해당하는 사건 수가 증가하고, 최근 단일 사건으로 적발되는 밀수 마약류의 규모가 거대화되고 있으며, 마약류 압수량도 증가 추세인 점 등을 반영, 대량범의 형량구간을 신설
- 양형 사례 분석 결과, 대량범의 제3유형에서 마약류 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높은 형량 선고 추세 → 이에 대유형 4(대량범)의 제3유형을 나누어, 10억 원 이상 구간을 신설(제4유형)
- ※ 10억 원 상당은 필로폰 약 10kg, 헤로인 약 12kg에 해당, 필로폰 10kg은 약 33만회 투약 분량(1회 투약 분량 0.03g)

3. 대마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

- 마약범죄 재범률이 증가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소위 ‘게이트웨이 드러그(Gateway Drug)’라 불리는 대마에 대한 수출입죄 뿐만 아니라 투약, 단순소지 등 범죄에 대하여도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
- 대마 수출입죄는 3-2유형에서 3-3유형으로 재배치됨으로써 종전 ‘감경 1년-3년, 기본 2년-4년, 가중 3년-6년’에서 ‘감경 2년6월-6년, 기본 5년-8년, 가중 7년-10년’으로 권고 형량범위가 대폭 상향됨
- 대마 투약·단순소지죄(1-2유형)의 가중영역도 ‘10월-2년’에서 ‘1년-3년’으로 권고 형량범위가 상향됨

4.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정비

- ① 특별가중인자인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의 정의규정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사용, 투약, 제공한 경우’ 및 ‘다른 범

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포함

-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마약을 사용, 투약, 제공하거나, 성범죄 등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마약류를 이용한 경우도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 정의규정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교부하거나 몰래 음식물에 타서 먹인 경우
 - 타인에 대한 보복, 원한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사용, 투약, 제공한 경우**
 -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② 대유형 2(매매·알선 등) 및 대유형 3(수출입·제조 등)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

- 최근 다크웹, SNS 등을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마약 매매 범행이 늘어나고 있고, 이는 온라인의 익명성, 접근 용이성으로 마약류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친 점,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마약 제공도 사회적으로 큰 우려를 불러일으킨 점 등 참작
- 정의규정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SNS(Social Network Service), 다크웹(Dark Web) 등 전파성이 큰 수단을 이용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에게 마약류가 든 음식을 나누어 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③ 대량범(대유형 4)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대유형 1, 2, 3)에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큰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신설

- 마약류는 수량 및 가액에 따라 죄질에 차이가 있는데,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범죄의 경우는 대유형 4(대량범)에 반영되어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가중처벌 규정이 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취급한 마약류 가액이 5,000만 원에 준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죄질이 불량함을 반영하여 특별가중인자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정의규정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큰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에서 제외되어 있는 죄(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 중 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나 매매목적, 매매알선 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자소유에 관한 죄와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 제8호의 죄)를 범하였고, 마약류 가액이 5,000만 원에 준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에서 제외되어 있는 죄(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죄 중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이외의 원료 등에 관한 죄)를 범하였고, 그 가액이 5,000만 원에 준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④ 대량범(대유형 4)에서 ‘영업범 중 마약류 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1, 3 유형)’를 특별가중인자로 신설

- 대유형 4의 제1, 3유형에는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한 범행을 ‘업으로’ 하는 경우(영업범)가 포함되어 있는데, 영업범 중 마약류 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함

⑤ 수출입·제조 등(대유형 3)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출입 또는 제조’도 특별감경인자로 신설

- 일반 매매·알선 등(대유형 2-가)에서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를 특별감경인자로 두는 것과 균형
- 정의규정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해당 인자 적용을 엄격히 함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매수 또는 수수 범행이 오로지 본인의 투약·단순소지 등 유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출입 또는 제조]

○ 수출입 또는 제조 범행이 오로지 본인의 투약·단순소지 등 유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

⑥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를 일반가중인자로 추가

▣ 향후 일정

1.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9차 공청회

- 일시: 2024. 2. 16.(금) 오후 2시, 대법원 1층 대강당
- 대상: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안,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안, 마약범죄 양형기준안

2. 다음 양형위원회 회의(제130차 회의)

- 일시: 2024. 3. 25.(월) 오후, 대법원 회의실
- 안건: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 심의 및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수정 양형기준,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및 마약범죄 양형기준 최종 의결

[별첨] 의결된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안,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안 및 마약범죄 양형기준안